

[사례] 사업양수도에 따른 감면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과 동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07-948, 2000. 7. 27.).

[사례] 기숙사와 사업용자산의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에서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취득세·등록세과세대상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장 구외에 있는 아파트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07-288, 1999. 12. 18.).

[사례] 사업용재산의 범위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면제대상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장 구외에 있는 기숙사용아파트는 동규정의 사업용재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와 등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288, 1999. 12. 14.).

[사례]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경공사업의 경우 사업용자산은 수목재배용토지 및 조경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귀문 잣나무재배지의 경우 수목재배용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783, 1999. 7. 1.).

[사례] 임대부분과 사업양수도에 따른  
 공공취득세·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한 일부 부동산은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면제세액 산정은 부동산연면적 대비 임대한 연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함(행자부 세정 13407-104, 1999. 1. 26.).

(2)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